

간주근로시간제 서면합의서

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 김명준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근로자대표 제동국은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라 근로자에 대해 사업장 밖 근무를 시키는 경우 근무시간 산정에 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.

- 다음 -

제1조(대상의 범위) 본 합의서는 출장 등의 이유로 소정근로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구원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여 그 근무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직원에게 적용한다.

제2조(인정근로시간) 제1조에서 정한 직원의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아래 각 호의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본다.

1. 국내출장

- 가. 관내 출장: 2시간 단위(1일 최대 8시간) 출장신청 및 해당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간주한다.
- 나. 관외 출장: 1일 8시간을 근무시간으로 간주하되, 간주기준은 표준근로 시간을 적용한다.
- 다. 국내출장 기간 중 휴일: 불가피한 업무수행이 발생한 경우 추후 증빙자료 (회의 내용, 안건 등)를 바탕으로 부서장 사후 승인 하에 8시간을 근무시간으로 간주한다. 단, 정산기간 내 연장근무 가능시간(1주 평균 12시간이내)을 초과한 경우, 연장근무 가능시간까지를 근무시간으로 간주한다.

2. 국외출장

- 가. 국외출장 기간 중 소정근로일: 1일 8시간을 근무시간으로 간주한다.
- 나. 국외출장 기간 중 휴일: 휴일 출장 중 불가피한 업무수행이 발생한 경우 추후 증빙자료(회의 내용, 안건 등)를 바탕으로 부서장 사후 승인 하에 1일 8시간을 근무시간으로 간주한다. 단, 정산기간 내 연장근무 가능시간(1주 평균 12시간이내)을 초과한 경우, 연장근무 가능시간까지를 근무시간으로 간주한다.
- 다. 국외출장에 따른 휴일 이동시간: 불가피한 업무수행을 위한 휴일 이동에 대하여 출장 건별 국내 출발, 국내 도착기준 편도 당 8시간을 근무시간으로 간주한다. 단, 정산기간 내 연장근무 가능시간(1주 평균 12시간이내)을 초과한 경우, 연장근무 가능시간까지를 근무시간으로 간주한다.

제3조(휴게시간) 제1조에서 정한 직원의 휴게시간은 연구원 근무요령에서 정한 휴게 시간을 적용한다. 단, 업무에 따라서 정해진 휴게시간에 휴게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시간대에 소정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한다.

제4조(연장 및 야간근무) 사업장 밖 출장 등의 경우 연장 및 야간근무는 인정하지 아니한다.

제5조(유효기간) ①이 합의서의 유효기간은 2019년 7월 14일부터 1년간으로 한다. 단, 양 당사자가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변경 요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 갱신된 것으로 본다.

②양 당사자 중 일방의 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합의서가 확정될 때 까지 동 합의서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한다.

2019. 07. 11.

한국전자통신연구원
원장 김명준


한국전자통신연구원
근로자대표 제동국 (인)
